대전 하늘채 스카이앤Ⅱ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

※ 상기 내용은 청약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, 청약신청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※ 본 자료는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거나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※ 사업주체는 청약 신청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(검증)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산정하므로 오류에 의한 당첨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청약일정 및 당첨자 발표

구분	신청접수일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	자격검증 서류제출
일자	2021.12.27(월) (09:00~17:30)	•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(스마트폰앱 포함)을 원칙으로 함 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 ※ 청약홈에서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	2022.01.05(수) 한국부동산원 청약홈	2022.01.06(목) ~ 01.16(일) (11일간) (10:00~17:00)

※ 인터넷 청약접수는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, ② 금융인증서,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. 단,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(10:00~14:00)에서 접수 가능(은행창구 접수 불가)하며 방문 시 서류 부족 및 서류 접수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접수 불가합니다.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: 전용면적 85㎡ 이하 공급세대수의 3% 범위) : 22세대

타 입	84A	84B	84C	합계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세대수	10	6	6	22

신청대상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내 용
신청자격	•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)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및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④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⑤ 무주택세대주 ※ 직계존속(배우자 포함)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※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※ 소형·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
선정방법	①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) 계속 거주 우선 공급 ② 잔여세대 발생 시 : 기타지역 거주자 공급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)
우선순위	• 해당지역(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기타지역(대전광역시 1년 미만,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)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: 가점제 적용 [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[별표1] 제2호 나목 가점점수 산정기준표] •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: 추첨제 적용
유의사항	※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(분양권·입주권 등 포함) ※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※ 피부양중인 직계존속이 요양시설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산정기준표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 or 유주택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•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 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) • 건물등기사항 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•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) • 혼인관계증명서 :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• 일반공급 : 청약자 및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 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: 청약자 및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산정
	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-	-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•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 • 가족관계증명서 •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(1) 만18세 이상 ~ 만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(2) 만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 ※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※ 청약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("분양권" 등을 포함)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	35	
		3명	20	-	-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• 청약통장(인터넷 청약 시 자동계산 됨)
	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 ~ 8년 미만	9	-	-	
총점	84					

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
※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(노부모 특별공급 제외)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 필수	서류유형 추가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O		서약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등	본인	• 견본주택에 비치
	O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
	O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O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O	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	O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•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발급(장애인, 국가유공자 제외) •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(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)
	O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병적증명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※ 계약 구비서류(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등)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으니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람			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O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•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택공급신청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• 주민등록번호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O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택공급신청자와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,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는 경우 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"상세"로 발급
		O	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 (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)
	O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여부 확인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• 만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2.17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
		O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 •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	O		피부양 직계비속	•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(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)		O	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	해당주택	•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O	무허가건물확인서	해당주택	•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의한 무허가건물임을 입증하는 서류
		O	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	해당주택	•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
		O	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서류	해당주택	• 주택공시가격확인서,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,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	O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인감증명서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. 단,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(수임인 인적사항 기재) • 인감도장 제출 생략 :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
	O		위임장	청약자	• 견본주택에 비치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• 본인서명확인 방식 : 청약자가 자필한 위임장(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)
	O		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*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•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

※ 상기 제증명서류(신청자 구비서류)는 최초모집공고일(2021년 12월 17일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※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(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
※ 상기 제증명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체표기하여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합니다.